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1
----------	-----

제출연월일 : 2022. 4. 12.

제출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시설 이용료 추가 경감을 통하여 부모의 경제·심리적 양육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함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부 수정 및 신설 : 안 별표 2
 - (수정) 감면율 20%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두 자녀를 둔 가족
 - (신설) 감면율 100% :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면제 조문 신설 : 안 제8조제1항
- 조문 정비
 - 안 제2조제8호, 안 제13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16조, 안 제32조, 안 제27조제1항, 안 제29조제2항, 안 제33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비용추계서 : 붙임1

5. 입법예고 결과 : 붙임2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붙임3

7.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붙임4

8. 규제심사 결과 : 붙임 5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이하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대관료 반환) 대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2. 위약금(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23조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초래하는”을 “주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보육정책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보육정책과장 박 미 경
	팀장 직위·성명	보육사업팀장 이향아
	담당자 성명·전화	전정인 (8976)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시 설	감면(액)율	대 상	비고
체험 전시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20인(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두 자녀를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
라바 파크	10%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
	20%	· 평일 단체 20인(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이상	
사계절 썰매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20인 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두 자녀를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
모든 유료시설	100%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체험 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 썰매장	1,000원	· 시설(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을 당일 다중 이용 시 처음 1개소 이후 이용 시설부터 할인액 적용	각 시설별 감면사유 적용 후 중복적용 가능

지 사용자가를 취소한 경우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29조(수탁자의 손해배상)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

제23조(수당 등) -----

----- 범위-----

----- 따라 -

-----.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

----- 관계 법령-----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개수·보수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수탁자의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
· 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
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
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한다.

제3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
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센터 운
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편
의시설의 대부 또는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 운영하는 -----

-----.

제3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주는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

- 본 조례안의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으로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놀이체험시설의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경감(면제)하는 사항이 해당됨
(세입 감소) : 제8조제2항 [별표 2]
-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세입(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그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 개정사항

기존	변경(개선)(안)
두자녀 이상을 둔 가족: 이용료 2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자녀를 둔 가족: 이용료 20% 감면 ◦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이용료 면제

- 예산추계

과목	개정전 세입(연수입)		개정시 감소예상액
관)경상적 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입장료수입	○ '19년도 기준 (정상운영)	578,436천원	△약 10%(예상) ※ 연평균 1억원 미만
	○ '21년도 기준 (코로나19 등 인원제한)	233,787천원	

4. 작성자

북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붙임2 입법예고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보육정책과-5059호(2022.3.2.)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3. 3.(목) ~ 3. 23.(수)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향후 추진계획

- 2022. 4. 5. ~ 4. 29. :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상정, 의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이기순	보육사업팀장	이향아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복지행정과장	대결 2022. 3. 24. 유희윤
복지국장	전결						
협조자	주무관	기타	법무행정팀장	이은경	법무담당관	양기영	
시행	보육정책과-7870			집수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동)		복지국 보육정책과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43	팩스번호	031-590-8399	/ kspoint@korea.kr		/ 비공개(5)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남양019)

1. 보육정책과-4344(202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2A경기남양019) 1부. 끝.

남 양 주 시



주무관	권필순	팀장	백진위	복지국장	전일 2022. 2. 25. 이인애
협조자					
시행	여섯아동과-5618	(2022. 2. 25.)	접수	보육정책과-4390	(2022. 2. 25.)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2동, 남양주시 청 복지국)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91	팩스번호	031-590-2269	/ kwonps@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남양019			
정책명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보육정책과		
	담당자명	전정인	전화번호	031-590-897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육정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 표현 : 없음 ✓성별특성 반영 :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필순/031-590-4491)

보육정책과장 귀하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2-14, 15)

보육정책과-4008(2022.2.22.)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10조 (재평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2부. 끝.

감 사 

주무관	이인섭	청렴윤리팀장	심현아	감사관	전달 2022. 2. 23. 홍준기
협조자					
시행	감사관-2120	(2022. 2. 23.)	접수	보육정책과-4178	(2022. 2. 23.)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zmxncbv3@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2-남양주-15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인섭
입 안 부 서	보육정책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전정인
평 가 결 과 통 지 과 일	2022. 2. 23.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2년 2월 23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이인섭 / 031-590-4719)</p>			
<p>보육정책과장 귀하</p>			

붙임5 규제심사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회신(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

1. 보육정책과-4166(2022.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행정규제(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의 영조물(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사용료는 행정규제 아님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끝.

법 무 당 향 표 영

주무관 김경아 남세자보호관 대결 2022. 2. 25. 법무담당관 진급
장동탄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69 (2022. 2. 25.)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법무담당관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12 팩스번호 031-590-2900 / huaijin74@korea.kr / 비공개(5)